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CC-3 농축물	
제품 번호	61009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자료없음.	
사용상의 제한	자료없음.	
다. 공급자정보		
회사명	CRC Industries, Inc.	
주소	885 Louis Dr. Warminster Pa 18974 미국	
전화번호	일반 정보	1-215-674-4300
	기술 지원	1-800-521-3168
	고객 서비스	1-800-272-4620
이메일		
긴급전화번호	24-시간 비상상황 (CHEMTREC)	1-800-424-9300 (US) 1-703-527-3887 (International)

2. 유해성·위험성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물리적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건강 유해성	흡인 유해성	구분 1
환경 유해성	분류되지 않음.	
분류되지 않은 기타 위해	분류되지 않음.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o 그림문자



o 신호어

위험

o 유해·위험 문구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o 예방조치 문구

예방

올바른 산업 위생 절차를 준수할 것.

대응

P301 + 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저장

P405

밀봉하여 저장하시오.

폐기

P50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알려지지 않음.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 번호	식별번호	함유량(%)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64742-70-7	KE-27774	40 - 45
파라핀 오일 (석유), 촉매 탈왁스 경( )		64742-71-8	KE-27775	20 - 25
n-Butyl stearate		123-95-5	KE-26345	10 - 15
Sorbitan oleate		1338-43-8	KE-31689	5 - 10
지방산, C18-불포화, 이분자체		61788-89-4	KE-35135	1 - 5
Sodium petroleum sulfonate		68608-26-4	KE-32519	1 - 5
페트롤라툼		8009-03-8	KE-28170	0.1 - 5

###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물로 헹굴 것.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비누와 물로 씻어 낼 것.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증세가 나타나거나 지속되면 의료진에 문의하십시오.
라. 먹었을 때	즉시 의사 또는 중독센터에 연락할 것. 입을 씻어내시오. 토하게 하지 말 것. 환자가 토하는 경우, 구토물이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머리를 낮출 것.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일반적인 지원 방식을 제공하고 증상에 따라 치료할 것. 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 증상은 지연되어서 나타날 수 있음.
일반적인 조치사항	의사에게 사용된 물질에 대해 알리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물 안개. 포말.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CO2).
부적절한 소화제	고압 살수시 화재가 확산되므로 고압 살수 방법으로 화재를 진압하지 말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화재 발생시, 건강에 유해한 가스가 생성될 수 있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착용할 보호구	화재 발생시 공기호흡기와 전신 보호복을 사용할 것.
예방조치	위험없이 처리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 지역으로부터 옮길 것.
일반 화재 위험성	특정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명시되지 않음.
특정 방법	표준 소방 절차를 준수하고 기타 관련된 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

###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필요없는 인원은 멀리 대피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 소지하는 동안 적절한 보호 장비 및 보호복을 착용할 것. 적절하게 환기가 되도록 할 것. 누출정도가 심각해서 통제할 수 없다면,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함. 개인 보호구에 관한 사항은 MSDS 제8항을 참조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하수도, 수로 또는 지하로 방출시키지 말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대량 누출: 위험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누출물을 막을 것. 가능한 경우 누출된 물질 주위로 도랑을 팔 것.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플라스틱 시트로 덮을 것. 질석, 마른 모래나 흙에 흡수시켜서 용기에 담을 것. 제품을 수거 후 누출 지역을 물로 세척할 것.  소량 누출: 흡착재질(예. 천, 플리스(fleece))로 닦아낼 것. 잔여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철저히 세척할 것.  절대로 얼질러진 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본래 용기에 넣지 말 것.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MSDS 제13항을 참조할 것.

###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장기간 노출을 피할 것. 적절히 환기할 것.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을 것. 올바른 산업 위생 절차를 준수할 것.
-----------	---------------------------------------------------------------------------------------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완전히 밀폐된 원래 용기에 저장할 것. 양립할 수 없는 물질과 멀리하여 보관할 것 (본 MSDS의 10항을 참조).

## 8. 노출방지/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ACGIH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

구성성분	종류	값	형태
n-Butyl stearate (CAS 123-95-5)	TWA	10 mg/m3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CAS 64742-70-7)	TWA	5 mg/m3	흡입성 분율.
지방산, C18-불포화, 이분자체 (CAS 61788-89-4)	STEL - 단기노출기준	10 mg/m3	호흡할 수 있는
파라핀 오일 (석유), 촉매 탈락스 경( ) (CAS 64742-71-8)	TWA TWA	5 mg/m3 5 mg/m3	호흡할 수 있는 흡입성 분율.
페트롤라툼 (CAS 8009-03-8)	TWA	5 mg/m3	흡입성 분율.

생물학적 노출기준

구성성분에 대해 알려진 생물학적 노출기준은 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일반적으로 시간당 10회 환기가 되는) 양호한 전체환기를 실시할 것. 환기 속도는 작업장 여건에 맞아야 함. 적용이 가능하면 공정기밀 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기타 공학적 관리를 사용하여 공기 중 수준이 권고 노출한계 이하가 되도록 유지시킬 것. 노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공기 중 수준이 허용되는 수준이 되도록 유지시킬 것.

다. 개인 보호구

o 호흡기 보호

엔지니어링 제어장치를 사용할 수 없거나 노출이 해당 노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NIOSH가 승인하고 유기 증기 카트리지가 장착된 카트리지 방독 마스크를 사용하십시오. 한정된 공간이나 비상시에는 자급식 호흡장치를 사용하십시오.

o 눈 보호

측면 보호면을 갖춘 보안경(또는 고글)을 착용할 것.

o 손 보호

보호장갑을 착용할 것: 나이트릴, 네오프렌.

o 신체 보호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할 것.

위생대책

물질 취급 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기 전에 씻는 등 항상 양호한 개인 위생 기준을 준수할 것. 작업복과 보호용 장비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물리적 상태	액체.
형태	액체.
색	호박색.

나. 냄새

석유

다. 냄새 역치

자료없음.

라. pH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녹는점 27 °C (80.6 °F) 추정됨

어는점 27 °C (80.6 °F) 추정됨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100 °C (212 °F) 추정됨

사. 인화점

> 176.7 °C (> 350 °F) 클리브랜드 오픈컵

아. 증발 속도

느림.

자. 인화성(고체, 기체)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하한 자료없음.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 자료없음.

폭발 한계 - 하한 (%) 자료없음.



제품	종		시험 결과
CC-3 농축물			
수생			
급성			
갑각류	EC50	물벼룩	20833.334 mg/l, 48 시간 추정됨
어류	LC50	어류	1442.8413 ppm, 96 시간 추정됨
구성성분	종		시험 결과

Sorbitan oleate (CAS 1338-43-8)

수생

급성

어류

LC50

무지개송어 ,donaldson trout  
(Oncorhynchus mykiss)

> 1000 mg/l, 96 시간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본 제품은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그러나 이는 다량 또는 잦은 누출로 인해 환경에 유해성을 갖거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수생환경 유해성, 만성

자료없음.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이 제품의 분해성에 대한 유용한 자료가 없음.

다. 생물 농축성

옥탄올/물 분배 계수 log Kow

지방산, C18-불포화, 이분자체

1 - 2.5, LogKow

라. 토양 이동성

이 제품에 대한 유효한 자료가 없습니다.

마. 기타 유해 영향

본 성분으로부터 부정적인 환경 영향 (예: 오존층 감소, 광화학적 오존 발생 가능성, 호르몬 붕괴, 지구 온난화 가능성) 은 없을 것으로 보임.

###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수거하여 재생하거나 밀봉 용기에 담아서 허가된 지역에서 폐기할 것.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빈 용기에 제품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기를 비운 후에도 제품표지의 경고사항을 따를 것. 빈용기는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수집되어야 함.

###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IATA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IMDG

위험물로 규제되지 않음.

MARPOL 73/78 부록 II 및 IBC 코드에 따른 벌크 상태 운송

설정되지 않음.

###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리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노출기준설정물질

규제되지 않음.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취급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찰물질

규제되지 않음.

취급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독물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유해물질

Paraffin oils (petroleum), catalytic dewaxed heavy (CAS 64742-70-7)

파라핀 오일 (석유), 촉매 탈왁스 경( ) (CAS 64742-71-8)

페트롤라툼 (CAS 8009-03-8)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추가 정보

이 물질의 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

목록현황

국가 혹은 지역

한국

목록명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 ECL )

목록 등재 (예/아니오)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성분들이 해당 국가(들) 의 목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냄

"아니오"는 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 해당 국가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음을 나타냄.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위험물 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한민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

유독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 1997-10 개정) 대한민국. 관찰 대상 화학물질 (TCCL 장관 명령 제 6조)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1986-45 개정) 대한민국.

취급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고시 제2001-36,

2001년 3월8일 개정) 대한민국. 취급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TCCL),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 1997년이전목록

대한민국.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4조)

나. 최초 작성일자

2015년 10월 8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해당없음.

라. 기타

자료없음.

책임의 한계

CRC Industries, Inc. 는 본 정보 및 제품 또는 본 제품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다른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모든 조건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취급, 보관 및 폐기를 위한 안전 조건을 비롯하여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손실, 부상,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있는 정보는 현재 가능한 최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